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승인에 따라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증가 및 본청 내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조정 : 595명 ⇒ 600명 (증 5)

○ 직급별 정원

- 일반직 정원 조정 : 563명 ⇒ 568명 (증 5)
- 본 청 정원 조정 : 303명 ⇒ 293명 (감10)
- 사업소 정원 조정 : 31명 ⇒ 46명 (증15)

※ 의회 11명, 직속기관 90명, 읍면 160명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 및 제30조

○ 예산조치 : 기준인건비 반영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2018. 1 .4 ~ 2018. 1. 24)

○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협의

○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 ※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, 경상북도로부터 성주군시설관리사업소 신설과 5급을 포함한 총 5명에 대한 증원 승인에 따라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총수와 일반직 정원, 본청 및 사업소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정원 총수는 595명에서 600명으로, 일반직 정원은 563명에서 568명으로 5명 증원하고, 성주군시설관리사업소 신설 및 운영을 위해 본청 정원은 303명에서 293명으로 10명을 감원하고 사업소 정원은 순증 5명과 본청 정원에서 감원한 10명을 포함하여 31명에서 46명으로 15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. 또한, 직급별 정원은5급 1명, 6급 상당이하 4명이 증원됩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시설관리사업소 신설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